#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숭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46 발의연월일: 2024. 9. 13.

발 의 자: 백승아·박홍배·강경숙

진선미 • 김준혁 • 문정복

정을호 · 김동아 · 김문수

서영석 · 양부남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적용시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법률 제 호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중 "2024년 12 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	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적용시한) 제151조제1항	제1조의2(적용시한)		
제4호의 개정규정은 <u>2024년 12</u>	<u>2027년 12</u>		
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u>월 31일</u>		